

1944년 식민지 조선영화계의 정책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 ‘결전비상조치’에 따른 제도적 변화상을 통해

함충범(일본 나고야대학)

논문 요약

본 논문은 1944년 일본에서 채택되어 식민지 조선으로 적용된 이후 영화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결전비상조치’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파생된 영화 제작, 배급, 흥행, 영사 부문에서의 제도적 변화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1944년 2월 25일 일본 내각에서 결정된 ‘결전비상조치요강’에는 ‘고급향락 정지에 관한 건’이, 여기에는 다시 ‘흥행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44년 3월에는 일본에서 ‘흥행의 구체적 쇄신 실시 요강’이 결정되었는데, 이후 조선영화계는 대대적인 제도적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우선 1944년 4월 7일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로 영화 제작배급 기구의 통합적 개편이 이루어졌다. 5월 8일에는 조선흥행등취체규칙 공포를 통해 극장 단속 및 흥행 규제 강화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어 7월 1일에는 사단법인 조선영화계발협회로 이동영사 조직이 일원화되었다. 8월 19일에는 기존의 조선흥행연합회가 사단법인 조선흥행협회로 재탄생하였다. 이를 통해 1944년 이후 식민지 조선영화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일본과 연동되고 더욱 밀접하게 여타 분야와 연계되며 한층 강도 높게 부문 간 또는 부문 내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 1940년대 한국영화사, 1944년 식민지 조선영화계, 결전비상조치, 고급향락 정지, 흥행의 결전체제

I. 서론

해방 직전 식민지 조선영화계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활동의 양상은 어떠하였을까. 최근 일제강점기, 그 중에서도 특히 1940년대를 중심으로 일제말기 한국영화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지만 유독 1944년 이후의 양상이 조명된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 시기(1943년 이후-인용자)의 한국영화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¹⁾라는 영화사적 관점과 “일제말기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역사연구가 그렇듯 영화관에 대한 기록도 1944년 이후의 것은 남아있지 않”²⁾다는 연구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만하다.

실제로 그 이전까지 조선영화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실던 조선 및 일본의 종합잡지 또는 영화잡지 대부분은 1942~44년을 통과하며 발행을 멈추게 된다.³⁾ 그런데, 비록 면수는 축소되었을지언정 해방 시점까지 명맥을 이어가던 간행물도 존재하였다. 대표적인 경우로 두 일간지 『매일신보(每日新報)』와 『京城日報(경성일보)』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어 기관지였고 후자는 일본어 기관지였다. 이들 신문은 해당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몇 안 되는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한편, ‘1944년’이라는 시기는 영화사적으로 나름의 특수성을 보이기도

1) 이에 대해 이영일은 “1943년 이후의 영화는 모두 일본어로 제작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1943년에 들어서자 이제 이 땅의 영화제작은 숨통이 막히고 말았”다고 서술한다.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개정판), 서울: 소도, 2004, pp. 207~208.

2) 김려실, “일제시기 영화제도에 관한 연구 -영화관 추이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41호, 2009, p. 34.

3) 예를 들면, 조선의 대표적 종합잡지 『삼천리(三千里)』(1926.6~)는 1941년 11월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1942년 3월 복간되었으나 동년 5월 『대동아(大東亞)』로 개명된 후 7월 폐간되었고, 『조광(朝光)』(1935.11~)은 1944년 12월 종간되었다. 한편, 1919년 7월 창간되어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잡지로 자리하던 『키네마준포(キネマ旬報)』의 후신인 『에가준포(映畫旬報)』(1941.1~)의 경우 1943년 11월까지 발행되었다.

한다. 영화 제도 및 정책 상 1944년이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기점으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가령, 1944년 4월 7일 “조선의 미약한 영화제작상황”과 “영화를 통한 선전이 중요한 시국에” 발맞추어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에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가 흡수되어 제작-배급을 통괄하는 ‘사단법인 조선영화사’가 설립되었고,⁴⁾ 5월 8일에는 “조선연극령’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영화부문의 「조선영화령」에 대응하는” 취지로 ‘조선흥행동체규칙’이 공포되었다.⁵⁾ 게다가, 1944년은 일본의 입장에서 태평양전쟁 상황이 더욱 악화되던 중에 식민지 조선에서도 7월 24일 제10대이자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의 취임을 통과하며 총력전 체제가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는 시대적 특징까지 띠고 있다.

그럼에도, 영화사적 차원의 거시적 측면에서 1944년 또는 그 이후 시기의 식민지 조선영화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일제말기 통제 영화제작회사’에서 만들어진 ‘조선영화 제작목록’에 대한 ‘재구’를 시도한 정도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⁶⁾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관련 연구를 보다 충실히 행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첫째,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1944년부터 해방시점까지 조선영화계의 변화상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어 한국영화사 연구영역에서 거의 공백 상태로 존재하던 미지의 시간대를 보다 충실히 채울 수 있다. 둘째, ‘일제말기’라는 추상적 시기에 매몰되어 있던 1944년 이후의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일제말기 내에서의 영화사적 시기 구분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일제말기이자 광복 직전 시기에

관한 정밀한 탐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조선영화(계)와 한국영화(계)의 연결/단절 지점과 상관 관계를 한층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1944년 일본에서 채택되어 식민지 조선으로 적용된 이후 영화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결전비상조치’에 주목하여, 이에 따른 영화 제작, 배급, 흥행, 영사 부문에서의 제도적 변화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동시기 한국영화사의 정책적 특수성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매일신보』 등 현존하는 1차 문헌자료에 대한 자료 발굴을 주요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하되,⁷⁾ 여타의 관련 자료 및 선행 연구 등도 종합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다.

II. ‘결전비상조치요강’의 결정과 조선에의 적용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하와이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아시아-태평양 전쟁은 미드웨이 해전(the Battle of Midway, 1942.6.4~6.6)을 통과하며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반격으로 전세가 역전된 이래 과달카날 전투(Guadalcanal, 1942.8.7~1943.2.9)를 거치면서 그 승기가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일본은 총리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주재 하에 타이, 버마, 필리핀, 만주국의 정상과 중국의 친일 정권, 인도 임시 정부 관계자를 도쿄(東京)로 불러 ‘대동아회의’(1943.11.5~11.6)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합국 측에서는 이집트에서 미, 영, 중 3국 수뇌 회담을 열고 ‘카이로선언’(1943.11.27)을 발표하는 한편⁸⁾ 군사적 공세를

4) 한상언, “일제말기 통제 영화제작회사 연구.” 『영화연구』 제36호, 2008, p. 411.

5) 박영정, 『연극/영화 통제정책과 국가 이데올로기』, 서울: 월인, 2007, p. 80. 그런데 이 규칙의 제1조는 “본령에서 흥행이란 영화, 연극, 연예 또는 관물을 요금을 받고 공중의 관람이나 청문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며 영화를 가장 먼저 포함시키고 있다.

6) 한상언, “일제말기 통제 영화제작회사 연구.” 『영화연구』 제36호, 2008; 이덕기, “일제하 전시체제기(1938~1945) 조선영화 제작목록의 재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8집, 2008 등이 있다.

7) 해당 시기 영화 활동이 민족(조선인/일본인), 언어(조선어/일본어)로 나뉘지 않은 채 통합적으로 규제되어 있었기에 관련 기사의 내용 역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여, 『매일신보(每日新報)』와 『京城日報(경성일보)』 가운데 조선어 신문인 『매일신보』에 방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강화함으로써,⁹⁾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1944년 들어 전쟁의 흐름은 개전국 일본에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콰잘레인 전투(Kwajalein, 1944.1.31~2.7)에 참전한 일본군이 대부분 전사 또는 생포된 데 이어 연합군의 트럭 공습(Truk, 1944.2.16~2.17)으로 전력에 커다란 손실이 생겼으며 에니웨톡 전투(Eniwetok, 1944.2.16~2.23)에서도 병력 상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전쟁에 더욱 사활을 걸게 되는데, 보다 공고화된 총력전 체제 하에 취해진 것이 바로 ‘결전비상조치(決戰非常措置)’였다. 1944년 2월 25일 내각에서 관련 ‘요강(要綱)’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멸적(滅敵) 시책 강력 추진”이라는 목적 하에 “3월부터 일제 실시 방침”을 전제로 두었다.¹⁰⁾

‘결전비상조치요강’은 1943년 9월 21일 내각에서 발표된 ‘현 정세 하에 있어서의 국정운영 요강(現情勢下ニ於ケル国政運営要綱)’ 중 ‘국내태세강화방책(国内態勢強化方策)’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¹¹⁾ 이후 1944년 2월

8)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2) 3국은 야만적인 적국에는 가차 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포명하였다. (3)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나 3국 모두 영토 확장의 의도는 없다. (4)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제도(諸島)를 박탈하고, 또한 만주(滿洲)·타이완(臺灣)·펑후(澎湖)제도 등을 중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구축(驅逐)한다. (특별 조항)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

9) 회의 기간(1943.11.22~11.26, 12.2~12.7) 중인 11월 23일 마킨 전투와 다라와 전투에서 연합군은 일본군을 거의 전멸시키기도 하였다.

10) “결전비상조치요강 결정.” 『매일신보』 1944년 2월 27일.

11) ‘현 정세 하에 있어서의 국정운영요강’의 내용은 각각 ‘방침’과 ‘국내태세강화방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전자는 “필승의 신념을 견고히 하고, 각종의 시책을 완수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성전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1) 활발한 전쟁 지도의 수행, (2) 국내 제반 태세의 강화, (3) 기민 활발한 외교 실행을 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그 목적을 (1) 성전(聖戰)의 본의, 대업에의 각오, 필승의 신념에 의한 불굴불요(不屈不撓)와 진중보국(貞忠報國)에의 지성(至誠), (2) 군수생산의 급속 증강 도모, (3) 식량의 절대적 자급 태세 확립, (4) 국내 방위 태세의 철저 강화에 두면서, 이를 위한 방도(方途)를 다음과 같이 10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1) 이번 성전(聖戰)에 대한 사상을 확립하고, 민심의 작용을 기해 국내 언론의 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반 단속을 강화하고, 만일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는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를 강구한다. (2) 행정 운영의 결전화(決戰化)를 도모한다. (3) 국민 동원의 철저를 도모한다. (4) 국내 방위 태세의 철저 강화를 위해 방도를 행한다. (5) 중요 기업의 국가성을 더욱 명확히 이루어 생산의 책임성을 확립함과 같이 제반의 조치를 강구한다(商). (6) 해륙 수송의 일관적 강화를 도모한다(企). (7) 조세 및 국민저축을

22일 도조 히데키가 “『이 중대한 시국에 처하는 방술에 대하여서는 나로서는 이미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지급(至急) 그 구체적 방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하고 있다』 고 말한 점을 곳 구현한 것”으로, 2월 25일 그와 서기장관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 간 의견 교환 및 조율이 있는 뒤 오후 내각 정보국에 의해 그 내용이 발표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¹²⁾

결전비상조치요강은 크게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순서대로 ‘(1) 학도동원 체제의 철저’, ‘(2) 국민노동 체제의 쇄신’, ‘(3) 방공 체제의 강화’, ‘(4) 간소화생활 철저의 각오와 식량배급의 개선 정비’, ‘(5) 공지(空地) 이용의 철저’, ‘(6) 제조금지 품목의 확대와 규격통일의 철저’ 등과 함께 ‘(7) 고급향락의 금지(高級享樂ノ停止)’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고급요리점 대합(待合, 요정 등 유흥업소-인용자)은 이를 휴업케 하고 또 고급호텔 환락장 등은 일시 이를 폐쇄하며 그 시설은 필요에 응하여 이를 여타에 이용하는 동시에 그 관계자는 시국에 적응하여 이의 활용을 꾀한다”는 것이었다.¹³⁾ 이에 따라, 영화를 비롯하여 대중 연예, 오락, 관람 등을 취급하는 흥행(興行)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게 되었다.

이후 결전비상조치요강은 “현하 전국(戰局)에 적응하여 직접 전력증강을 급속히 달성하고자”¹⁴⁾ 1944년 2월 28일 내각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날 각 의에서 실행 구체안이 정식 결의되었다. 여기서 ‘고급향락 면의 정지’, ‘해운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자금의 전력 집중을 도모하여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킨다(藏). (8) 가격 및 배급 제도의 철저한 간소화를 도모한다(企, 商, 農). (9) 각종 외곽 단체는 관청에 준해 그것을 정리하는 한편 업무의 운영에 철저한 쇄신을 도모한다(關係各省). (10) 각종 통계 기관 정도로 통계 회사 등 생산 제2선 부면에 대하여 철저한 정리를 행함과 동시에 그 업무 및 사무에 붙여, 관청에 준해서 철저한 쇄신을 하고, 그 인원을 절감한다(關係各省). 일본 국립국회도서관(國立国会図書館) 내 관련 사이트(<https://rnavi.ndl.go.jp/politics/entry/bib00499.php>) 참조.

12) “결전비상조치요강 결정.” 『매일신보』 1944년 2월 27일.

13) 이후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중점 수송의 강화, (9) 해운력의 쇄신 강화, (10) 평시적 또는 장기 계획적 사무 및 사업의 정지, (11) 중앙 감독사무의 지방 위임, (12) 재판검찰의 신속화, (13) 보유 물자의 적극적 활용, (14)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철저와 사찰의 강화, (15) 국민운동의 전개, (16) 국민지도 계발, (17) 관청 휴일을 축감(縮減)하여 평시 집무의 태세를 확립한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國立国会図書館) 내 관련 사이트(<https://rnavi.ndl.go.jp/politics/entry/bib00499.php>) 참조.

14) “조선에서도 추수(追隨) 결전비상조치 5일부터 실행.” 『매일신보』 1944년 3월 2일.

력의 쇄신 증강’, ‘보유 물자의 적극 활용’, ‘관청 휴일 축감 상시 집무의 태세의 확립’ 등 4개 항목에 대한 선결적 실시가 의결되었다.¹⁵⁾ 이때 확정된 4항목에 대한 ‘결전비상조치요강의 최초의 실행안’은 (1) 고급향락 정지에 관한 구체안 요강(3월 5일 실행) (2) 해상수송력 비상동원 조치안 실시방침 요강 (3) 관청의 문서물품 등의 정리 및 그 적극적 활용 공출에 관한 건(즉시 실행) (4) 관청의 상시 집무에 관한 건(3월 1일 실행) (5) 관리의 출장 제한에 관한 건(즉시 실행) 등 모두 5건이었다.

한편, 결전비상조치요강은 그 시행 시점에 발맞추어 식민지 조선에도 도입되었다. 이는 3월 1일 오후 4시 총독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참석 하 조선총독부 임시 국장회의에서 결의되었고, 7시 총독부 정보과를 통해 공표되었다. 이에 따라 “내지의 조치에 전면적으로 순응하기로 방침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전력기지(戰力基地)’ 조선에서도 3월부터 결전비상조치요강의 실시가 이루어졌다.¹⁶⁾

그런데, 조선의 경우 2월 29일 일본에서 결정된 4항목 5건의 실행안 중에서 ‘해운력의 쇄신 증강’ 관련 ‘(2) 해상수송력 비상동원 조치안 실시방침 요강’을 제외한 3항목 4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았다. 이에, 해당 내용은 관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건과 고급향락 정지에 관한 사항 1건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일본과 동일하게 “관공서에 관한 조치는 (3월-인용자) 1일부터, 요리점 휴업 등 고급향락 정지는 5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¹⁷⁾

영화사적 견지에서 주목되는 점은, 조선에 적용된 총 4건의 결전비상조치요강 항목 가운데 관공(서)에 대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영화정책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고급향락의 금지에 관한 건이라는 사실이다.

15) “결전비상조치 발동 4항목의 실행안 결정.” 『매일신보』 1944년 3월 2일.

16) “「결전비상조치」 조선도 실시 4항목을 결정.” 『매일신보』 1944년 3월 3일.

17) 위의 기사.

1944년 3월 초 시점에서 일본 내지를 넘어 식민지 조선에서도 ‘고급향락’(산)업은 전시 총동원을 방해하고 그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존재로 지목되었고, 흥행(장) 역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그 정책적, 제도적 조치가 흥행 및 상영 부문에 머물지 않고 영화 전 영역에 걸쳐 커다란 파장과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다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Ⅲ. ‘고급향락 정지’에서 ‘흥행의 결전체제’로

조선에 적용된 결전비상조치요강 관련 항목 중 고급향락 정지에 관한 건은 ‘(1) 고급 요리점 (2) 예기(藝妓) (3) 카페 및 바 (4) 흥행에 대한 조치 (5) 휴업 실시일 및 기간 (6) 휴, 폐업한 예기 여급 등의 조치 (7) 오락장의 전폐업(轉廢業) (8) 휴업자에 대한 조치’ 등 모두 8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¹⁸⁾

예기, 기생, 여급 등이 접대하는 고급 요리점이나 카페, 바에 대한 일체-

18)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급 요리점(料理屋) : 예기(藝妓)의 출입을 인정한 요리점은 일응(一應) 전면적으로 이를 휴업케 할 것 예기의 출입을 불인(不認)한 요리점은 그 영업의 계속을 인정할 것. 제1항에 의하여 휴업 당한 요리점 중 일부는 필요에 응하여 예기의 출입을 불인한 요리점 음식점 또는 식좌수(食座數)로서 개정하고 영업을 인정할 것. (2) 예기 『치옥(置屋)』 및 예기 : 예기 『치옥』 및 예기(기생을 포함)는 전면적으로 이를 휴업시킬 것. (3) 『카페』 『바』 『카페』 『바』 등에서 여급 또는 옥녀(屋女) 등을 객석에 나서게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휴업시킬 것. 전항에 의하여 휴업시킨 『바』 등의 일부는 필요에 따라 음식점으로 갖쳐서 영업하는 것을 인정할 것. (4) 흥행에 대한 조치 : 주간 흥행에 대하여는 적의(適宜) 제한을 가하도록 조치할 것 또 세공(稅共) 입장료 3원을 초과하는 고급 흥행을 정지하는 동시에 흥행 내용을 국민 사기의 양양 전력 증강에 기여하도록 쇄신하여 일면 이동연극 이동영화 등의 제편(齊遍)적 확충을 강화할 것. (5) 영업 휴지(休止)는 3월 5일부터 전선(全鮮) 일체히 실시할 것. 휴업의 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6) 휴, 폐업한 예기 여급 등의 조치 : 휴업 또는 폐업한 예기, 여급 등에 대하여는 그 적성을 감안하여 시국 하 필요한 방면에 취업케 할 것. (7) 오락장 등에 대하여는 실정에 응하여 전폐업(轉廢業)케 할 것. (8) 휴업자에 대한 조치 : 휴업한 자에 대하여는 전폐업을 권장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물적 시설에 대하여는 시국에 응하여야 이의 중립적 이용 방법을 연구할 것. 전폐업자에 대한 경제적 원호(援護) 조치와 조세의 감면 조치 등에 대하여 별도 적절한 방침을 책정할 것. 위의 기사 참조.

일절(一切)의 영업 금지와 고급 풍의 오락장, 흥행장에 대한 선별적 운영 정지를 골자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락과 퇴폐, 사치와 태만을 조장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의 준거가 마련된 셈인데, 이 가운데 ‘(4) 흥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추려진다. 첫째, 극장, 영화관, 여타 흥행장에서의 낮 시간 흥행을 제한하고 입장료 3원(세금 포함) 이상의 고급 흥행을 금지한다. 둘째, 영화나 연극 또는 악극의 내용 검열을 강화한다. 셋째, 이동 극단(연극)이나 이동 영사(영화)의 활동을 장려한다.¹⁹⁾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바, 흥행 분야의 경우 단순히 영업 시간 및 요금, 흥행물에 대한 규정적 제한이 두어진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 양상과 활동 방식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통제와 간섭이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영화, 연극, 악극 등이 대중 관객에게 단순히 시간을 때우게 하는 것(餘暇)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움직여 세상에 대한 시선과 관점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지닌다는, 이전부터 견지되어 오던 정책 당국의 입장과 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 내각에서 결전비상조치 중 고급향락 정지에 따른 ‘흥행의 구체적 쇄신 실시 요강’이 결정되어 1944년 3월 20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되었다. 흥행 방면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그 체제를 “건전명랑 본위로 재편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는 ‘흥행의 결전체제’라 일컬어졌다.²⁰⁾ 아울러 3월 5일부터 일본 및 조선에서 동시적으로 실시된 ‘흥행에 대한 조치’와 궤를 같이하였던 터, 전반적인 구성 역시 흥행 내용, 흥행 형태, 이동 흥행 등 크게 세 가지로 체계화되었다.

우선 ‘흥행 내용의 쇄신’에 있어서는 “(가) 일본 정신문화를 선양시킬 것 (나) 간소 강건한 동시에 명랑해야 할 것 (다) 전쟁을 해나가기 위한 국민

생활의 새로운 질서 건설을 촉진시킬 것 (라) 전시 하 국민 생활과 별 관계가 없거나 또는 화려하고도 경박한 것과 그 외에 건전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못 쓴다”는 게 전반적인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고전적인 가부키(歌舞伎)는 우수성이 인정되는 작품에 한해 상연이 허용된 데 반해, 대체로 불건전하다고 여겨지던 소녀가극 등은 금지의 대상이 되었다.²¹⁾

다음으로 ‘흥행 형태의 쇄신’ 면에서는 ‘(가) 영화 흥행 시간은 종래의 2시간 반에서 대개 1시간 40분으로, 극영화의 길이는 20% 감해진 8권(2,000미터) 정도로, 연극 연예의 흥행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반 이내로 제한함²²⁾ (나) 흥행 회수는 될 수 있는 대로 증가시켜, 영화의 경우 하루 2~3회 상영을 가능케 함 (다) 흥행장은 방공장(防空場) 또는 수송 상의 편의를 고려하고 관객 분포에 따른 위안의 효과 고양을 위해 재배치함 (라) 영화 봉절관의 증가를 도모하고 영화 배급의 본위를 실적이 아닌 적정에 두는 한편 상영관 계통의 결정과 상영 순서의 편성에 대해 관청의 지시를 받도록 함 (마) 연극과 연예의 보편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극단과 연예단의 형태를 쇄신 또는 재편성함으로써 전시 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함’이 핵심적인 골자였다.²³⁾ 흥행 시간, 방식, 횟수, 장소뿐 아니라 흥행물의 순서와 흥행 집단의 형태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의 범주에 속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연예 이동음악 등의 보급’과 관련해서는 “(가) 우수한 극단 연예단 음악단을 다시 적극적으로 이동공연으로 동원하고 이동연예의 계획적으로 수급 조정할 기관을 정보국에 설치함 (나) 흥행과 이동공연의 조정을 도하는 동시에 이동공연에 출연하는 극단 연예단 음악단의 경비는 원칙으로 그 극단 연예단 음악단 또는 그 소속 흥행자의 부담으로 하지

21) 위의 기사.

22) 특별한 경우 흥행 시간을 연장을 인정하고, 문화영화의 강제상영을 정지하는 대신 장편 문화영화의 제작을 고려한다는 점도 부가되었다.

23) “흥행의 결전체제 건전명랑 본위로 재편성.” 『매일신보』 1944년 3월 22일.

19) “낮 흥행을 철저히 제한.” 『매일신보』 1944년 3월 3일.

20) “흥행의 결전체제 건전명랑 본위로 재편성.” 『매일신보』 1944년 3월 22일.

안할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었다.²⁴⁾ 국가의 주도 하에 흥행 및 공연의 취지가 더욱 철저히 전쟁 동원을 위한 국민 계몽에 두어지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흥행의 구체적 쇄신 실시 요강’은 ‘결전비상조치요강’ 내 ‘고급향락 정지에 관한 건’ 가운데 ‘흥행에 관한 조치’의 세 가지 사항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었다. 게다가 ‘흥행에 관한 조치’ 상의 흥행 형태, 흥행 내용, 이동 흥행의 순서 중에서 흥행 형태와 흥행 내용의 순서를 맞바꾸어, 흥행의 형태를 전시 체제와 연동하여 체계화한 상태에서 흥행의 내용 역시 전시 상황에 부합하는 조건을 통해 구축하였다. 이로써 영화를 비롯한 대중적 연예오락물의 흥행 목적과 방식이 ‘국책’으로 더욱 편중되는 ‘흥행의 결전체제’를 향한 정책적 경향이 조성되었다.

IV. 영화 제작·배급 기구의 통합적 개편

흥행 방면에 ‘결전체제’가 마련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흥행’과 관련된 각 공연 및 상영 분야별로 구체적인 ‘결전비상조치’가 취해졌다.

가령, 연극 및 연예 분야에서는 “결전비상조치령에 의하여” 조선연극문화협회에서 “회원의 자질 향상과 각 극단의 내용을 쇄신하고자” 심사위원회를 두고 1944년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 회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행한 후 동년 5월 1일 최종 심사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각 단체가 한층 확고한 신념 아래 더욱 연극 문화 운동의 수준을 노피도록” 실격자는 무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4가지 사항의 예규(例規)가 정해졌다.²⁵⁾ ‘조선연극문화협회’는 1942년 7월 26일 “총후국민에 건전한 오락을 제공함과 함께 단

24) 위의 기사.

25) 이때 최종 심사 결과 합격자는 323명, 가(假) 합격자는 63명이었다. 한편, 나머지 세 가지 예규는 소속 단체의 변경, 상연 각본 관련, 기타 단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실격자는 무대 행위 금지.” 『메일신보』 1944년 5월 10일.

체 자체의 발전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총독부 경무국에 의해 기존의 ‘조선연극협회’(1940년 12월 22일 발족)와 ‘조선연예협회’(1941년 1월 26일 발족)가 해산-통합됨으로써 결성을 이룬 단체였다.²⁶⁾

영화 분야의 경우, 내지 영화법(1939년 4월 5일 법률 제66호로 제정·공포)을 거의 그대로 이식한 ‘조선영화령’(1940년 1월 4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로 공포) 도입을 계기로, 1939년 8월 16일 결성된 ‘조선영화인협회’에서 전 영화인에 대해 등록 신청을 받고 조선영화인협회 내 기능심사위원회(1940년 12월 18일 첫 회합)에서 자격 심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²⁷⁾ 게다가, 조선연극문화협회가 발족된 1942년 7월에는 제작·배급·흥행 부문에 대한 일원적·통폐합 조치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²⁸⁾

이에, 1944년 시점에서 영화 분야에서의 ‘결전비상조치’는 제작-배급 기구의 통합적 개편이라는 보다 새롭고도 적극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44년 4월 7일, 조선총독부의 주도 하에 사단법인 조선영화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업무가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로 이관되었는데, 그러면서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가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로 흡수되고 그것이 다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社團法人 朝鮮映畫社)’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10개사와 40여 개에 달하던 제작, 배급 회사가 1942년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와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로 통합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 제작-배급상의 변화가 부문 간 일원화라는 양상을 띠며 재차 대대적으로 일게 되었다.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의 전체 부서는 크게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는 총

26) “극 문화의 새 출발 연극, 연예의 양 단체 합동.” 『메일신보』 1944년 3월 22일.

27) 당시 영화인들은 영화령 시행일인 1940년 8월 1일부터 1941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1차로 자격 허가를 얻은 영화인은 모두 58명(감독 9명, 배우 42명, 촬영 7명)이었다. “신체제영화진흥용 영화인 오십팔명 등록.” 『메일신보』 1941년 2월 4일.

28) 총 69명의 흥행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조선흥행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1942년 1월 7일이었고, 기존의 40여개 회사가 조선 유일의 영화 배급사로 통합·정리된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朝鮮映配)의 업무 개시일은 1942년 5월 1일이었으며, 기존의 10개 회사가 조선 유일의 영화 제작사로 통합·정리된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朝映)의 설립일은 동년 9월 29일의 일이었다.

무부, 배급 부문을 관할하는 배급부, 제작 부문을 담당하는 제작부로 이루어졌다. 총무부 산하에는 서무과, 기획과, 경리과가,²⁹⁾ 배급부 산하에는 배급과, 편성과, 보급과가,³⁰⁾ 제작부 산하에는 계획과, 제작과, 기능과, 기술과가³¹⁾ 배속되어 있었다. 이전의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와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에 비해 조직 구조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된 것이었다.³²⁾

신 기구의 초기 인사 구성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직책이 일본인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중역의 경우, 사장에는 기존의 두 사단법인 영화 회사를 맡고 있던 다나카 사부로(田中三郎)가 연임되었으며 상무 두 자리는 총무 겸 배급부장 오카다 준이치(岡田順一)와 제작부장 노자키 신조(野崎眞三)로 채워졌다. 전무 직책은 미정으로 남겨졌다.³³⁾ 과장급 이하에서도 총무부와 배급부의 경우 빠짐없이 진용이 갖추어졌다. 과장, 계장, 주임, 주재원 등의 직급에도 대부분 일본인이 포진되었다. 다만 제작부의 경우, 기술과장 이재명을 제외한 계획, 제작, 기능과의 과장직이 공식인 상태였고, 그 산하의 촬영계장 이명우(창씨명: 瀬戸明), 편집계주임 양주남 및 제작과 산하의 미술계주임 윤상열(창씨명: 平沼相烈) 등 조선인이 비교적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³⁴⁾

이를 통해, 이미 그 통제합 방식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의 중심 업무가 작품 제작(혹은 창작)이 아닌 배급을 통한 영화의 보급과 상영에 두어져 있었으며 이는 그 조직 구조와 인사 구성의 구축 과정 및 민족 배분 상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기구 개편은 어디까지나 “홍행 부문의 쇄신 및 이동영사의 본격적 활용을 지향하고, 현재 영화가 가지는 사명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행되었기 때문이다.³⁵⁾

이러한 특징은 동년 7월 다시 한 번 두드러져 나타났다. 1944년 7월 7일 전임 제작부장의 사임이 발표된 후 그 자리를 다나카 사장이 겸임하는 한편 도호의 유명 감독 구마가이 히사토라(熊谷久虎)가 이사 대우의 촉탁으로 영입되어 제작 수뇌부를 차지하고³⁶⁾ 쇼치쿠 기획부 출신의 요네타 오사무(米田治)의 입사까지 성사됨으로써, “반도영화 제작진의 쇄신”을 위한 제작부의 인사 인동이 행해졌던 것이다.³⁷⁾

바로 이때 그동안 조선총독부의 정보과와 보안과에서 심의 중이던 영화 프로그램 신편성에 대한 실시 요강이 7월 12일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와 조선홍행연합회의 수뇌부에게 전달됨으로써 영화 배급의 ‘비상체제’가 더불어 수립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프린트 한 벌을 세 벌로 늘리고 주요 도시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며 근접지에 교환제를 채택하는 한편 중요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프린트를 특별 배급함을 골자로 하는 “전 조선 영화 배급 홍행체제의 비상시에 대비한 긴급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던 바,³⁸⁾ 그 바탕에는 ‘결전비상조치’가 정책적 토대로 자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V. 극장 단속 및 홍행 규제의 강화

연극·연예 분야 및 영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결전비상조치’가 취해진 지 다시 1개월여가 지난 1944년 5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197호로 ‘조선홍행

29) 서무과는 비서계, 서무계 등 2계로, 기획과는 기획계, 감리계, 고사계, 조사계 등 4계로, 경리과는 주계, 경리제1계, 경리 제2계, 영선계 등 4계로 구성되었다.

30) 배급과는 업무계, 제1계, 제2계, 제3계 등 4계로, 편성과는 선정계, 정비계, 창고계, 영사기술계 등 4계로, 보급과는 선전계와 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평남/평북/함남/함북/도쿄(東京)주재원 등 1계 13주재원으로 구성되었다.

31) 계획과는 계획계, 각본계 등 2계로, 제작과는 문화영화계, 미술계 등 2계로, 기술과는 촬영계, 녹음계, 조명계, 현상계, 편집계 등 5계로 구성되었으며, 기능과의 경우 속계가 편성되지 않았다.

32) “映画界試寫 朝鮮映画.” 『日本映画』 1944년 5월 1일.

33) “藝能.” 『京城日報』 1944년 4월 15일.

34) “藝能 朝映の陣容決定.” 『京城日報』 1944년 4월 16일.

35) “映画界試寫 朝鮮映画.” 『日本映画』 1944년 5월 1일.

36) “藝能 熊谷氏朝映に入社.” 『京城日報』 1944년 7월 12일.

37) “映画界試寫 朝鮮映画社制作部の人事移動.” 『日本映画』 1944년 8월 1일.

38) “映画界試寫 全朝鮮の映画配給非常体制成す.” 『日本映画』 1944년 8월 1일.

등취체규칙(朝鮮興行等取締規則)'이 공포되었다. “홍행자 기예자(技藝者) 연출자(演出者)의 자질을 향상하고 흥행 내용을 획기적으로 쇄신하며 그 취체 법규를 통일하여야 취체를 간소하게 할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³⁹⁾ 시행 일자 는 다음 달 1일부터였다.

법규는 전체적으로 흥행, 상연, 극단·연예단·관물단, 흥행자의 개념을 정의한 부분(제1조~제4조), 흥행자(제5조~제14조)·기예자(제15조~제18조)·연출자(제19~제22조)의 자격·허가·신청·증명을 다룬 부분, 흥행의 허가 및 성격을 명시한 부분(제23조~제24조), 각본 검열 및 임검(제25조~제34조) 관련 부분, 흥행자기예자연출자 직능 조합(협회 혹은 연합회)에 대한 부분(제35조~제37조), 법령에 관한 참고 사항, 처벌 내용, 시행 시일 등을 담은 부분(제38조~제46조) 등 총 46조로 구성되어 있었다.⁴⁰⁾

또한 각 항목은 흥행, 흥행자, 흥행장, 흥행물, 흥행의 각 분야 등에 대한 규정과 함께 그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규제 관련 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흥행은 요금 유무에 관계없이 흥행지 소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흥행자와 14세 이상의 기예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가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통해 취업지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출자 역시 취업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흥행장의 신설, 증개축, 재축 이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허가를 요한다. 넷째, 극단 및 연예 단체는 요금 여부에 상관없이 본령의 적용을 받으며, 연합회를 포함한 흥행자 등의 조합 역시 본령에 의거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섯째, 각본은 본령에

39) “흥행물에 필승체제 6월부터 조선서도 취체규칙을 개정.” 『매일신보』 1944년 5월 9일.

40) “朝鮮興行等取締規則.” 『朝鮮總督府官報』, 5174號, 朝鮮總督府(亞細亞文化社), 1944.5.18, pp. 81~82 참조. /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의 주요 내용을 다룬 1944년 5월 9일자 『매일신보』 기사에는 관련 사항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 흥행에 관한 사항, (2) 흥행자에 관한 사항, (3) 연극, 연예, 관물의 구별, (4) 흥행장에 관한 사항, (5) 기예자에 관한 사항, (6) 연출자에 관한 사항, (7) 극단, 연예단 등에 관한 사항, (8) 각본에 관한 사항, (9) 조합에 관한 사항. ‘취체간소화 통일될 법규의 내용.’ 『매일신보』 1944년 5월 9일.

근거하여 조선연극문화협회를 경유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도 내에서 상연된 바 있는 작품의 경우 소관 도지사의 검열을 받을 수 있다.⁴¹⁾

이로써, 그때까지 ‘도령(道令)’에 의거하여 각 도별로 존재하던 흥행에 대한 규제 관련 제도가 ‘총독부령’이라는 통일된 형태로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의 모든 흥행 장르, 행위, 인물, 집단, 장소 등이 보다 직접적이고도 철저하게 당국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흥행등취체규칙에 대해 박영정은 “조선연극령’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영화 부문의 「조선영화령」에 대응”한다고 주장한다.⁴²⁾ 취체규칙의 전반적 내용이 여타 흥행보다 연극 분야에 방점이 찍혀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인 바, 일견 타당한 설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 또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영화령의 전체 26개 조항 및 부칙 가운데 ‘흥행(자)’ 관련 사항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항목이 제작·배급 부문에 비해 현저히 적었으며,⁴³⁾ 핵심 내용인 영화업 허가제와 영화인 등록제의 대상이 법령 상에 각각 ‘영화 제작업 및 영화배급업’(제2조)과 영화의 ‘제작업’ 종사자(제5조)로 적시되는 등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부문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주를 이루었다.

41) 위의 기사.

42) 박영정,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문화정책논총』 제16집, 2004, p. 258. 아울러 그는, 영화법 도입 후 칙령 제846호에 의해 문부성에 설치된 연극영화음악 개선위원회 중 ‘연극 개선에 관한 구체적 방책 여하’라는 주제로 열린 연극 분야의 1차 자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가정 ‘연극법’이 1940년 12월 내각 정보국의 신설을 계기로 의회 제출(1942)까지 이루어 졌지만 여타 법안에 밀려 현실화되지 못하였음을 배경으로 제시한다. 위의 논문, pp. 255~258.

43) 조선영화령의 조항 중에 ‘흥행(자)’만을 다룬 것은 “주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영화 흥행자에 대하여 외국영화에 관한 그의 종류 또는 수량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16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 외로는 영화의 종류, 수량, 배급, 설비 등에 관한 제18조에서 영화배급업자와 함께 ‘흥행자’가, 임검에 대한 내용의 제20조에서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와 함께 ‘흥행자’가, 처벌 사면을 다룬 제24조에서 영화의 제작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와 함께 영화흥행자가 포함된 정도이다. 한편, 법령 전체적으로 영화 ‘활동’의 측면에서 ‘흥행’이 아닌 ‘상영’이라는 용어가, 제작(업자), 배급(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흥행업자’라는 구체성과 명확성을 지닌 단어 대신 ‘흥행자’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게다가 조선흥행등취체규칙 역시 “본령에 있어 흥행은 영화, 연극, 연예 또는 관물을 요금을 받고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제1조) 등의 조항을 통해 흥행의 범주 안에 영화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었다.

요컨대, 영화 분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은 조선영화령을 통해 제작, 배경, 상영의 정책적 통제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흥행 관련 제반 사항을 더욱 구체화, 체계화하는 법제적 장치였다고 할 만하다.

아울러, ‘흥행에 관한 조치’의 세 가지 사항인 흥행 내용의 쇄신, 흥행 형태의 쇄신, 이동 흥행의 증진 상에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체제 발족을 통한 영화 제작·배급 기구의 통합적 개편이 첫 번째인 흥행 내용 쇄신에 대한 사전 조치의 성격을 띠었다면,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의 도입을 통한 극장 단속 및 흥행 규제의 강화는 두 번째인 흥행 형태의 쇄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세 번째인 이동 흥행의 증진과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이동영사 부문과 관련된 일이었을 터, 다음 장에서는 그 조직의 일원화 조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VI. 이동영사 조직의 일원화, 그리고 조선흥행협회의 결성

1944년 7월 1일, 조선 내 이동영사 조직에 대한 통합적 정비가 단행되었다. “영화 행정 운영의 비상조치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제작, 배급을 일원화하여 조선영화사를 설립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결전 시 농산어촌의 사기 앙양에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이동영사망의 통일을 단행”하기 위한 상영 부문에서의 후속 조치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⁴⁴⁾

이는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직속의 이동영사반, 총독부 학무국 산하

조선교육영화연맹 등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종래의 이동영사 단체들이 해체되어 ‘사단법인 조선영화계발협회’로 접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조선영화계발협회 내의 기구와 장비가 확충되었다.

조선영화계발협회는 1942년 1월 21일 발족한 조선총독부 정보과의 직속 단체였던 터,⁴⁵⁾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동영사 조직의 개편 역시 총독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협회의 총재로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정무총감이 추대되었고, 전무이사에는 마에다(前田)가 임명되었으며, 고문 자리에는 군·관민 유력 인사들이 배치되었다. 아울러 지부(支部)적 성격의 ‘실행단체’로서 13개 도 단위로 해당 도지사(道知事)를 회장으로 하는 각 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를 총괄하는 회장 직은 아베 다쓰이치(阿部達一) 총독부 정보과장이 겸하였다.

1944년 8월 8일 아베 다쓰이치는 담화를 통해 전 조선의 이동영사 조직을 일원화하고 향후 총독부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동영사 기구 정비 작업이 “결전 하 전력 자원의 증산에 분투하고 있는 반도 대중에 대하여 선전 계몽의 중대한 책무를 맡은 영화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을 분명히 하였다. 즉 “조선 총 인구의 8할이나 되는 지방 민중을 대상으로 하여 불타는 듯한 구적 격렬 정신 더욱 앙양시켜 결전 생산에 총력을 바치게 하는” 것, 이동영사 조직에 대한 통합적 정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⁴⁶⁾

한편으로, 사단법인 조선영화계발협회로의 이동영사 조직 일원화는 이를 통해 영화 분야에서의 결전비상조치가 일단락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전술한 바대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의 출범을 통해 흥행 내용의 쇄신

44) “映画界試寫 朝鮮の移動映写運動も一元化.” 『日本映画』 1944년 8월 1일.

45) 초대 회장은 구라시마 이타루(倉島至) 총독부 정보과장이 맡았으며, 지금은 4만원이었다. 설립 당시 백 수십 편의 극영화영화를 보유하고 있었고, 연간 50~60편의 ‘계발선전영화’의 제작도 계획하고 있었다. “조선영화계발협회 정보과서 발회식.” 『매일신보』 1942년 1월 13일.

46) “영화 계발에 막차 이동영사 기구 정비.” 『매일신보』 1944년 8월 8일.

이, 조선총독부채규칙의 도입을 통해 흥행 형태의 쇄신이 행해진 상태에서 이동 흥행의 증진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결전비상조치요강’ 내 ‘고급향락 정지에 관한 건’ 가운데 ‘흥행에 관한 조치’의 세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기에 그러하다.

또한 영화 분야만을 놓고 보더라도, 조선영화계를 대표하는 부문별 일원화 체제가 재구축되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제작-배급 기구가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로, 이동영사 조직이 사단법인 조선영화계발협회로 통폐합됨으로써, 제작/배급 통제회사와 여러 이동영사반 중심으로 꾸려진 1942년의 전시체제보다도 더욱 집중적인 총동원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흥행 관련 조합의 경우 1942년부터 조선총행연합회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사단법인 조선영화계발협회 출범을 공식화한 아베의 담화가 있는 직후 그 체제가 ‘사단법인 조선총행협회’로 재편성되었다.

조선총행협회는 1944년 8월 19일 설립 허가를 얻고 9월 6일 등기가 완료되었다. ‘사단법인’이라는 형태로의 (재)설립을 통해 “영화 연극 연예 및 관물 흥행 등 보급 발전의 쇄신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의 지기(志氣)를 양양함으로써 국운 진전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내걸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협회 이사 명단 중 가장 먼저 배치된 이가 다름 아닌 총독부 정보과장 아베 다쓰이치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나머지 이사는 나리키요 다케마쓰(成清竹松), 우메미야 사부로(梅宮三郎), 다카야마 미쓰구(高山貢), 다나카 히로시(田中博) 등 모두 4명이었다.⁴⁷⁾ 인사 구성을 통해서도, 조선총행협회는 1942년 1월 7일 조선총행연합회⁴⁸⁾ 이상으로

47) “法人組合登記.” 『朝鮮總督府官報』, 5313號, 朝鮮總督府, 1944, p. 31.

48) 조선총행연합회는 “1940년 12월 20일 경기도 지사의 공인협회로서 재발족을 이”룬 경기도총행협회 중심으로 발족하였으며, 따라서 주요 인사 역시 상당 부분 경기도총행협회 또는 그 전신인 경성총행협회 지도부 출신자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초대 회장은 경기도총행협회 회장 마지막 우메키치(間島梅吉)가 맡았고 경성총행협회 회장 출신 오이시 사다시치(大石貞七)의 경우 7인 중 한 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마지막은 경성 회락관(喜樂館), 오이시는 경성 중앙극장(中央劇場) 및 함경남도 흥남관(興南館)의 관주였”던 바, 이들 대부분은 당시 조선의 흥행업자들이었다. 함충범, “194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화 상영의 제도적 기반 연구 -1942년 시점의 배급, 흥행 부문

관변 단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1944년 8월 시점에서 영화 분야의 결전비상조치가 일단락됨과 동시에,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사단법인 조선영화계발협회-사단법인 조선총행협회’라는 영화 ‘제작-배급-흥행·영사’ 기구와 조직의 일원화가 완성을 이루었던 바, 이러한 구성 체계는 해방년도인 이듬해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1945년 3월 10일 제40회 육군기념일을 기념하여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조선신궁에서 영화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 조선영화인 총궐기대회’가 열렸을 때, 이를 공동으로 주최한 단체가 바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사단법인 조선영화계발협회, 사단법인 조선총행협회 등 세 곳이었다.⁴⁹⁾

조선영화계에 대한 총독부 정보과와 조선군 보도부 등 권력 기관의 영향력과 통제력은 물론, 일제강점 최단말기 식민지 조선영화계의 기구 및 조직 구성의 취지와 특질을 가늠토록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VII. 결론

1944년 이후 식민지 조선영화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던 데에는, 서두에서 언급한 민족 중심적인 영화사적 관점과 자료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 외에도 특정 시기 내의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균질적으로 단정해 버리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제말기’, 혹은 ‘1940년대’, 혹은 ‘태평양전쟁 이후’ 등 동일 시대

신체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8호, 2014, p. 138.

49) 행사는 일동 궁성 요배를 시작으로 나리키요 조선총행협회 상무이사의 인사말, 조선군 보도부 하야시(林) 중위의 격려사, 마에다 조선영화계발협회 전무의 선서문 낭독, 그리고 다나카 조선영화사 사장이 선창하는 ‘성수 만세’ 삼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선 영화인 총궐기대회.” 『매일신보』, 1945년 3월 12일.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시대는 변해 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한, 어찌 보면 단순한 목적 하에 행해졌다.

본고에서는 1944년이라는 시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영화계가 어떠한 정책적 여건 하에서 기구, 법령,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제작-배급, 흥행, 영사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이러한 대대적인 제도적 변화의 이면에 ‘결전비상조치’로 대변되는 동시기 시대적 특수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1944년 이후 식민지 조선영화계가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일본과 연동되고,⁵⁰⁾ 더욱 밀접하게 여타 분야와 연계되며 한층 강도 높게 부문 간 또는 부문 내 일원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발견된다.

그 가운데 이동영사 조직의 일원화나 사단법인 조선흥행연합회 관련 내용 등은 이제껏 실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적어도 주목 받지 못하였던 부분이다.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나 조선흥행등취체규칙 등의 경우 선행연구가 존재하긴 하나, 이들 기구와 법령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정책적 의도 하에 제도화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조차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⁵¹⁾

그렇다면, 이와 같이 조성된 정책적, 제도적 환경 하에서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어떠한 영화들이 제작, 배급, 상영(흥행, 영사)되었으며 이에

50) 조선에서 이동영사 조직 일원화가 단행되기 직전인 1944년 5월 15일 사단법인 조선영화계발협회가 사단법인 대일본영화교육회의의 지부로 결정되었던 일 등의 사례도 있었다. 『映画界試寫 [官庁団体] 映画教育会本年度事業計画決定.』 『日本映画』 1944년 5월 1일.

51) 한상언은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배급사의 통합에 있어 (...)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신작영화의 계획이 신문에 실리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은밀한 방법으로 통합이 진행되었으며 총독부에서 이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하고(한상언, “일제말기 통계 영화제작회사 연구.” 『영화연구』 제36호, 2008, p. 411), 박영정의 경우, 조선흥행등취체규칙 상의 기능조합 관련 부분을 설명하며 “일제말기에 실제 이러한 기능조합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단정한다(박영정,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계 정책.” 『문화정책논총』 제16집, 2004, pp. 261~262).

대한 선전의 방식이나 대중의 반응 등은 어떠하였을까. 극영화의 제작이 갈수록 위축되었고 순회 영화회는 계속해서 활황을 이루었다는 정도의 개괄적 답변만이 가능함을 생각할 때,⁵²⁾ 적지 않은 내용이 여전히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 속에, 본 연구의 의의는 1944년 이후 식민지 조선영화사 연구의 시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서론 말미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장기적으로는 일제말기이자 광복 직전 시기에 관한 정밀한 탐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조선영화(계)와 한국영화(계)의 연결/단절 지점과 상관 관계를 한층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52) 일본의 경우, 제작 부문에 있어서는 1936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1943년 11월 6일 발기인회와 창립총회를 거친 후 사단법인 형태로 개조된 대일본영화협회(大日本映画協會)로의 영화 행정의 일원적 위탁을 통해, 흥행 부문에 있어서는 결전비상조치에 따른 흥행 쇠퇴를 통해 영화 작품의 전반적인 경향이 “국민 위안”의 성격을 띠며 “전환”되었다고 일컬어진다. 가토 아쓰코(加藤厚子)에 따르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 심의 방법의 변경”, “피트 수 단축에 의한 제작의 곤란”, “오락 경향이 강화된 것” 등으로 요약된다. 加藤厚子, 『総動員体制と映画』, 東京: 新曜社, 2003, pp. 249~252.

참고문헌

- 김동호 외, 『한국영화정책사』, 파주: 나남출판, 2005.
- 김려실, “일제시기 영화제도에 관한 연구 -영화관 추이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41호, 2009.
- 이덕기, “일제하 전시체제기(1938~1945) 조선영화 제작목록의 재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8집, 2008.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개정판), 서울: 소도, 2004.
- 박영정,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문화정책논총』 제16집, 2004.
- 박영정, 『연극/영화 통제정책과 국가 이데올로기』, 서울: 월인, 2007.
- 한국영상자료원 편,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2』,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1.
- 한상언, “일제말기 통제 영화제작회사 연구.” 『영화연구』 제36호, 2008.
- 함충범, “194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화 상영의 제도적 기반 연구 -1942년 시점의 배급, 흥행 부문 신체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8호, 2014.
- “신체제영화진흥용 영화인 오십팔명 등록.” 『매일신보』 1941년 2월 4일.
- “조선영화계발협회 정보과서 발회식.” 『매일신보』 1942년 1월 13일.
- “결전비상조치요강 결정.” 『매일신보』 1944년 2월 27일.
- “결전비상조치 발동 4항목의 실행안 결정.” 『매일신보』 1944년 3월 2일.
- “조선에서도 추수(追隨) 결전비상조치 5일부터 실행.” 『매일신보』 1944년 3월 2일.
- “「결전비상조치」 조선도 실시 4항목을 결정.” 『매일신보』 1944년 3월 3일.
- “낫 흥행을 철저히 제한.” 『매일신보』 1944년 3월 3일.
- “극 문화의 새 출발 연극, 연예의 양 단체 합동.” 『매일신보』 1944년 3월 22일.
- “흥행의 결전체제 전진명량 본위로 재편성.” 『매일신보』 1944년 3월 22일.
- “취체간소화 통일될 법규의 내용.” 『매일신보』 1944년 5월 9일.
- “흥행물에 필승체제 6월부터 조선서도 취체규칙을 개정.” 『매일신보』 1944년 5월 9일.
- “실격자는 무대 행위 금지.” 『매일신보』 1944년 5월 10일.
- “영화 계발에 박차 이동영사 기구 정비.” 『매일신보』 1944년 8월 8일.
- “전선 영화인 총궐기대회.” 『매일신보』 1945년 3월 12일.

- 加藤厚子, 『総動員体制と映画』, 東京: 新曜社, 2003.
- 高島金次, 『朝鮮映画統制史』, 京城: 朝鮮映画文化研究所, 1943.
- “法人組合登記.” 『朝鮮總督府官報』 5313號, 朝鮮總督府, 1944.
- “映画界試寫 [官庁団体] 映画教育会本年度事業計画決定.” 『日本映画』 1944년 5월 1일.
- “映画界試寫 全朝鮮の映画配給非常体制成す.” 『日本映画』 1944년 8월 1일.
- “映画界試寫 朝鮮映画.” 『日本映画』 1944년 5월 1일.
- “映画界試寫 朝鮮映画社制作部の人事移動.” 『日本映画』 1944년 8월 1일.
- “映画界試寫 朝鮮の移動映写運動も一元化.” 『日本映画』 1944년 8월 1일.
- “藝能.” 『京城日報』 1944년 4월 15일.
- “藝能 朝映の陣容決定.” 『京城日報』 1944년 4월 16일.
- “藝能 熊谷氏朝映に入社.” 『京城日報』 1944년 7월 12일.
- “朝鮮興行等取締規則.” 『朝鮮總督府官報』 5174號, 朝鮮總督府(亞細亞文化社), 1944.

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particularity of
colonial Joseon' Filmdom in 1944

: Through changes of system after 'Emergency measure for decisive battle'

Ham, Chung-Beom(Nagoya University)

'The Emergency measure for decisive battle' was enacted by the Japanese ministry on February 25, 1944. That included 'The Prohibition of luxurious entertainment', which included the 'System for decisive battle of performance'. Subsequently, 'The System for decisive battle of performance' introduced in Japan and colonial Joseon in March, 1944. The filmdom of colonial Joseon faced big changes in the system from it. Fil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irms were integrated on April 7, 1944, legal foundation for control of theaters and regulation of performance was instituted on May 8. Tour projector organization was unified on July 1, all by the Joseon Film Corporation on April 7, 1944. Additionally the Joseon performance federation was re-organized as 'The Joseon performance association' on August 19.

Keywords : History of Korean cinema in the 1940s, Filmdom of colonial Joseon in 1944, Emergency measure for decisive battle, Prohibition of luxurious entertainment, System for decisive battle of performance

투고일 : 2015년 10월 30일, 심사일 : 2015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5일